



Samchun Chemicals

물질안전보건자료(Material Safety Data Sheet)

0.1mol/L - 질산은용액(N/10) (0.1mol/L-Silver nitrate solution(N/10))

Section 1 – 화학제품과 회사에 관한 정보

MSDS 등록번호	AA00130-0000000148
가.제품명	0.1mol/L - 질산은용액(N/10) (0.1mol/L-Silver nitrate solution(N/10))
나.제품의 권리 용도와 사용상의 제한	본 제품은 19. 실험용 화학물질(시약) 외의 용도로는 사용할 수 없음
다.공급자 정보	
회사명 : 삼천순약공업㈜	주소 : 경기도 평택시 산단로 16번길 117(모곡동)
긴급전화번호 : 031-668-0700/3	담당부서 : 시설안전부
인터넷 주소 : http://www.samchun.com	

Section 2 – 유해성·위험성

가.유해성위험성 분류	피부 부식성/피부 자극성 심한 눈 손상성/눈 자극성 급성 수생환경유해성 만성 수생환경유해성	구분2 구분2 구분1 구분1
-------------	---	--------------------------

나.예방조치문구를 포함한 경고표지 항목



◦그림문자

◦신호어

경 고

H315 피부에 자극을 일으킴

H319 눈에 심한 자극을 일으킴

H400 수생생물에 매우 유독함

H410 장기적인 영향에 의해 수생생물에게 매우 유독함

◦유해위험 문구

P264 취급 후에는 취급 부위를 철저히 씻으시오.

예방 P280 보호장갑/보호의/보안경/안면보호구를 착용하시오.

P273 환경으로 배출하지 마시오.

P321 (눈에 들어갔을 경우 많은 양의 물이나 생리식염수로 15분 이상 눈을 세척하고 즉시 의사의 치료를 받을 것, 피부에 접촉했을 경우 오염 된 의복 및 신발을 즉시 벗고 15분 이상 다량의 물과 비누로 씻을 것, 흡입 시 노출로부터 환자를 즉시 신선한 공기가 있는 곳으로 옮기고 호흡정지 및 곤란 시 인공호흡 실시 및 의사의 치료를 받을 것, 먹었을 경우 즉시 의사의 치료를 받을 것)처치를 하시오.

대응 P302+P352 피부에 묻으면: 다량의 물로 씻으시오.

P332+P313 피부 자극이 나타나면: 의학적인 조치/조언을 받으시오.

P362+P364 오염된 의류를 벗고 다시 사용 전 세척하시오.

P305+P351+P338 눈에 묻으면: 몇 분간 물로 조심해서 씻으시오. 가능하면 콘택트렌즈를 제거하시오. 계속 씻으시오.

P337+P313 눈에 자극이 지속되면: 의학적인 조치/조언을 받으시오.

P391 누출물을 모으시오.

저장 자료없음

폐기 P501 폐기물 관련 법령에 따라 내용물/용기를 폐기하시오
다. 유해성위험성 분류기준에 포함되지 않는 기타 유해성위험성
NFPA 지수(0~4단계) : 보건=자료없음, 화재=자료없음, 반응=자료없음

Section 3 – 구성성분의 명칭 및 함유량

화학물질명	관용명 및 이명	CAS번호 또는 식별번호	함유량(%)
질산은 (Silver nitrate)	NITRIC ACID, SILVER(I) SALT	7761-88-8	1~2
물 (Water)	DIHYDROGEN OXIDE	7732-18-5	98~99

Section 4 – 응급조치 요령

- | | |
|----------------|--|
| 가. 눈에 들어갔을 때 | 많은 양의 물이나 생리식염수로 15분 이상 눈을 세척하고 즉시 의사의 치료를 받을 것. |
| 나. 피부에 접촉했을 때 | 오염된 의복 및 신발을 즉시 벗고 15분 이상 다량의 물과 비누로 씻을 것. |
| 다. 흡입했을 때 | 노출로부터 환자를 즉시 신선한 공기가 있는 곳으로 옮기고 호흡정지 및 곤란시 인공호흡 실시 및 의사의 치료를 받을 것. |
| 라. 먹었을 때 | 구토를 하지 않도록 하고 즉시 의사의 치료를 받을 것 |
| 마. 기타 의사의 주의사항 | 의료진이 해당물질에 대해 인지하고 보호조치를 취하도록 할 것. |

Section 5 – 폭발·화재시 대처방법

- | | |
|---|---|
| 가. 적절한(및 부적절한) 소화제
나. 화학물질로부터 생기는 특정 유해성
다. 화재 진압시 착용할 보호구 및 예방 조치 | 적절한 소화제: 물 분무, 이산화탄소, 포말 소화제, 분말 소화약제
부적절한 소화제: 자료없음
열분해 생성물 : 질소 산화물, 은 산화물
위험없이 할 수 있으면 용기를 화재지역으로부터 이동시킬 것.
방열복 및 공기호흡기등 필요한 보호구를 반드시 착용후 화재진압을
하고 불가능시 즉각 철수 할 것.
진화가 된 후에라도 상당 시간 동안 물 분무로 용기를 냉각시킬 것.
관계인의 접근을 막고 위험 지역을 격리하며 출입을 금지할 것. |
|---|---|

Section 6 – 누출 사고시 대처방법

- | |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|
| 가.인체를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사항 및 보호구 | 누출된 물질을 만지지 말 것. 흡입과 피부 접촉을 피하고 밀폐장소인 경우 공기호흡기 착용 및 환기시키고 발화원을 제거할 것. |
| 나.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사항 | 유출방지를 최소화하고 유출물질은 용기에 보관하여 회수할 것 |
| 다.정화 또는 제거방법 | 유출물질은 모래, 점토, 기타 흡착물질로 흡수시킬 것 |

Section 7 – 취급 및 저장방법

- | | |
|--|--|
| 가. 안전취급요령 | 피부접촉, 증기흡입 및 눈에 침입 방지, 모든 용기는 접지시킬 것. |
| 나. 안전한 저장방법
(피해야 할 조건을 포함함) | 보관용기는 밀봉하여 건조하고 서늘한 곳, 환기가 잘 되는 곳에 저장할 것. 혼합금지물질과 격리시킬 것 |

Section 8 – 노출방지 및 개인보호구

	것 화학물질 취급장소 근처에 눈 세척시설 및 비상세안장치를 설치할 것 보안경은 안전보건공단의 인증을 필 할 것
◦손 보호	화학물질용 안전장갑은 안전보건공단의 인증을 필 할 것 화학물질로 인한 인체유해성이 우려되므로 취급시 화학물질용 안전장갑을 착용할 것
◦신체 보호	화학물질용 보호복은 안전보건공단의 인증을 필 할 것 화학물질로 인한 인체유해성이 우려되므로 취급시 화학물질용 보호복을 착용할 것

Section 9 – 물리화학적 특성

가.외관(물리적 상태, 색 등)	무색 액체	나.냄새	자료없음
다.냄새역치	자료없음	라.pH	자료없음
마.녹는점/어는점	자료없음	바.초기끓는점/끓는점 범위	자료없음
사.인화점	자료없음	아.증발속도	자료없음
자.인화성(고체,기체)	자료없음	차.인화 또는 폭발범위의 상한/하한	자료없음
카.증기압	자료없음	타.용해도	자료없음
파.증기밀도	자료없음	하.비중	약 1(20°C)
거.n-옥탄올/물 분배계수	자료없음	너.자연발화온도	자료없음
더.분해온도	자료없음	러.점도	자료없음
며.분자량	자료없음		

Section 10 – 안정성 및 반응성

가.화학적 안정성 및 유해 반응의 가능성	권장하는 보관 상태에서 안정함 중합하지 않음.
나.피해야 할 조건 (정전기방전,충격,진동 등)	열, 스파크, 화염 및 기타 점화원을 피할 것. 혼합금지물질과의 접촉을 피할 것.
다.피해야 할 물질	환원제, 암모니아수
라.분해시 생성되는 유해물질	분해생성물 : 질소 산화물, 은 산화물

Section 11 – 독성에 관한 정보

가.가능성이 높은 노출 경로에 관한 정보

자료없음

나.건강 유해성 정보

◦급성독성

(노출 가능한 모든 경로에 대해 기재)

경구: LD50 2882mg/kg Mouse(추정치)

경피: LD50 > 119047mg/kg Rat(추정치, 유사물질 Ag)

흡입: 자료없음

◦피부 부식성 또는 자극성

구성성분 중 질산은의 경우 OECD 가이드라인 431에 따른 시험결과
피부 부식성 있음. 혼합물 분류기준에 따라서 피부 자극성으로 분류
함

◦심한 눈손상 또는 자극성

구성성분 중 질산은의 경우 토끼를 이용한 시험 결과 심한 눈 손상
성을 나타냄. 혼합물 분류기준에 따라서 눈 자극성으로 분류함

◦호흡기 과민성

OECD 가이드라인 406에 따른 시험 결과 피부 과민성이 나타나지
않음(유사물질: 은)

◦피부 과민성

산업안전보건법: 자료없음

고용노동부고시: 자료없음

IARC: 자료없음

OSHA: 자료없음

ACGIH: 자료없음

NTP: 자료없음

EU CLP: 자료없음

◦발암성

◦생식세포 변이원성	OECD 가이드라인 487에 따른 시험관 내 체외 포유류 소핵 시험 결과 음성(유사물질: 황산은)
◦생식독성	OECD 가이드라인 474에 따른 생체 내 포유류 적혈구 소핵 검사 결과 음성(유사물질: 은)
◦특정표적장기 독성(1회 노출)	OECD 가이드라인 422에 따른 생식/발달독성 스크리닝 시험 결과 독성이 나타나지 않음(유사물질: 은)
◦특정표적장기 독성(반복 노출)	급성 및 반복독성 시험에서 유의미한 독성이 나타나지 않음(유사물질: 은)
◦흡인 유해성	OECD 가이드라인 407에 따른 반복 경구독성 시험 결과, 경미한 간 손상을 나타내는 혈액학적 변화가 나타났으나 조직병리학적 정보가 제한적이며, 중대하지 않은 독성으로 분류에 적용하지 않음 (유사물질: 은) 자료없음

Section 12 – 환경에 미치는 영향

가.생태독성	어류: LC50 0.6~1.2mg/L 96hr Pimephales promelas(추정치) EC10 0.0095~0.019mg/L 217day Salmo trutta(추정치)
	갑각류: LC50 0.011~0.022mg/L 48hr Daphnia magna(추정치)
	조류: 자료없음
나.잔류성 및 분해성	잔류성: 자료없음 분해성: 자료없음
다.생물 농축성	농축성: 자료없음 생분해성: 자료없음
라.토양 이동성	자료없음
마.기타 유해영향	오존층 유해성: 해당없음

Section 13 – 폐기시 주의사항

가.폐기방법	적용규정에 따라 폐기할 것.
나.폐기시 주의사항 (오염된 용기 및 포장의 폐기 방법을 포함함)	혼합금지물질과 분리하여 폐기할 것.

Section 14 – 운송에 필요한 정보

가.유엔번호	3082
나.유엔적정 선적명	환경유해성 물질, 액체, 달리 명시된 품명이 없는 것 ENVIRONMENTALLY HAZARDOUS SUBSTANCE, LIQUID, N.O.S.
다.운송에서의 위험성 등급	9(P)
라.용기등급	III
마.해양오염물질(해당 또는 (비해당으로 표기))	해당함
바.사용자가 운송 또는 운송 수단에 관련해 알 필요가 있거나 필요한 특별 한 안전대책	화재시 비상조치: F-A 유출시 비상조치: S-F

Section 15 – 법적 규제현황

가.산업안전보건법	작업환경측정대상물질(측정주기 : 6개월) 관리대상유해물질 노출기준설정물질
나.화학물질관리법	유독물질
다.위험물안전관리법	자료없음
라.폐기물관리법	지정폐기물, 폐유독물
마.기타 국내 및 외국법	유독물질임에 따라 <화학물질의 분류 및 표시 등에 관한 규정>에 따름

Section 16 – 그 밖의 참고사항

가.자료의 출처	ECHA, HSDB 안전보건공단 화학물질정보 MSDS 국립환경과학원 화학물질정보시스템 한국소방산업기술원 국가위험물정보시스템
나.최초작성일자	2002.07.30
다.개정횟수 및 최종 개정일자	10 / 2024.11.11
라.기타	* 이 MSDS는 작성시 당사의 전문지식, 최신정보 등에 근거하여 작성하였으며 제공하는 화학물질의 유해·위험성 분류결과는 인용된 참고자료에 따라 차이가 발생될 수 있음. 주어진 정보는 안전한 취급, 사용, 공정, 저장, 운송, 폐기 등에 관한 안내 자료일 뿐이며 제품의 질적 특성에 대해 보증하지 않음.